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89호 2019. 12. 30(월)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469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470호	고창군 수난구호 비용지원 조례	2
○ 고창군 조례 제247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 고창군 조례 제2472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8
○ 고창군 조례 제2473호	기념비 동상 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
○ 고창군 조례 제2474호	경로이마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고창군 조례 제2475호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17
○ 고창군 조례 제2476호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23
○ 고창군 조례 제2477호	학생복지 지원 조례	29
○ 고창군 조례 제2478호	적극행정 운영 조례	31
○ 고창군 조례 제2479호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32
○ 고창군 조례 제2480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33
○ 고창군 조례 제2481호	군의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42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49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44
○ 고창군 규칙 제1150호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47
○ 고창군 규칙 제115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49
○ 고창군 규칙 제1152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55
○ 고창군 규칙 제1153호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30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145호 고수 연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변경승인 143
- 고창군 고시 제146호 삼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145
- 고창군 고시 제150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147
- 고창군 고시 제159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150
- 고창군 고시 제160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68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155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1609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장례지원 조례(안) 157
- 고창군 공고 제1622호 공인의 신조 공고(인사위원회 및 장학재단 운영) 163
- 고창군 공고 제1638호 고창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열람 공고 164
- 고창군 공고 제1651호 공인의 신조 공고(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에 따른 신조 개각) 165
- 고창군 공고 제168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66
- 고창군 공고 제1688호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신규작성 시행공고 179
- 고창군 공고 제1713호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194

고창군 조례 제 2469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창군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고창군 조례 제 2470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 2.“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3.“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 4.“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 5.“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6.“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7.“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창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창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고창군 수난구호 비용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고창군 조례 제 2471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를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 2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설시장 장옥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강제징수)”를“(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절차”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지방세의 준용)”을“(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창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p>	<p>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p> <p>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p><신 설></p>	<p>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p>
<p><신 설></p> <p>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인회원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개발 등의 사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p>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p> <p>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p>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 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1. 상인회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및 시장명
-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 2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설시장 장육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절차-----
-----.

제45조(준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창군 조례 제 2472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동반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호 중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제11조제1항 중 “관내에 5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에 대하여”를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로, “100억원”을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100억원까지, 1,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200억원까지,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300억원”으로, “시설투자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수행기간

- 가. 투자이행 : 입주계약로부터 최대 3년 이내
- 나. 고용인원 : 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 유지

2. 입지보조금

- 가. 투자금액 1,500억원 이상 : 최대 16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 나.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 최대 2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 다.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 : 최대 3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3. 기반시설설치비

-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억원 초과 : 50% 이내
-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200억원 초과 : 60% 이내

제17조제2항 본문 중 “국가나 다른 자금”을 “국가(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나 고창군의 다른 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p><신 설></p> <p><신 설></p> <p>④ · ⑤ (생 략)</p> <p>제17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생 략)</p> <p>②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u>국가나 다른 자금을</u>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나. 고용인원 : <u>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 유지</u></p> <p>2. 입지보조금</p> <p>가. 투자금액 1,500억원 이상 : 최대 16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p> <p>나.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 최대 2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p> <p>다.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 : 최대 3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p> <p>3. 기반시설설치비</p> <p>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억원 초과 : 50% 이내</p> <p>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200억원 초과 : 60% 이내</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국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나 고창군의 다른 자금-----</p>
---	--

고창군 조례 제 2473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
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
로서 건립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가·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
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국장, 총괄부서 과장, 건설도시과장,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창군의회 의원
- 2. 「고창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 3. 「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위원
- 4.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알려야 한다.
-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알린다.
-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관계	
건립대상자	성 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시 (발생일시)	
	주요업적개요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공적조서) 3. 건립취지 4. 그 밖에 증빙서류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라. 재 질 :
 5. 작품설명 6. 제 작 자 7. 사 업 비 8.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기념비·동상·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기념비·동상·조형물의 전면사진 (5"×7")

고창군 조례 제 2474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1매의 바우처카드를”을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매년 초 1회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이를”을 “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장은 고창사랑상품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년 말 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용) 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조례 제 2475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람사르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2. “습지시설”이란 습지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홍보관, 생태공원, 친환경 주차장,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람사르 운곡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습지 내 시설물의 관리·운영
2. 습지의 개발 및 보전 등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시설 수입금 관리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시설의 이용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③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날 휴관 할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범위) 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승인) ①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단, 세미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용승인 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 또는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이용료) 탐방열차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이용승인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았을 경우
4.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시설의 운영

제12조(홍보관) 습지 홍보관은 전시실, 포토존, 옥상정원, 세미나실 등이며,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종과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관광 활성화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생태공원) 군수는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탐방열차)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탐방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지 제3호로 한다.

③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제15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미나,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제16조(관리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고창군 습지 위원회

제17조(설치)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습지 관련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창군 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행정·민간)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행정)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민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과 민간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습지 관할구역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국내·외 생태환경 전문가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지역 주민대표, 언론인 등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습지관리계획 수립
3. 습지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위탁받은 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민간)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창군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4조(수당 등)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사업

제25조(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지원) 군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습지 주변 마을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탐방열차 이용료(제14조 관련)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탐방열차	초등학생 이하	1,000원	< 편도기준 >
	중학생 이상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람사르 운곡습지 시설 이용승인(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내용	이용시설			
	행사명			
	이용기간		이용인원	
	이용목적		총계	남 여
변경내용	이용시설			
	행사명			
	이용기간		이용인원	
	이용목적		총계	남 여
<p>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p> <p>(서명)</p> <p>고창군수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람사르 운곡습지 시설 이용승인취소 통지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내용	이용시설			
	행사명			
	이용기간		이용인원	
	이용목적		총	남 여
취소사유				
<p>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고창군수 (인)</p>				

[별지 제3호서식]

탐방열차 운행기준(제14조 관련)

제1조. 운행구간

- ① 탐방열차 운행구간은 친환경주차장에서부터 운곡서원까지로 한다.
- ② 탐방열차 운전사(이하 “운전사”라 한다)는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운행을 하면 아니 된다.

제2조. 운행시간

- ① 탐방열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절기(03월~10월) : 09:00 부터 18:00 까지
 - 2. 동절기(11월~02월) : 09:00 부터 17:00 까지
- ② 탐방열차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
 - 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시설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휴관일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시설의 관리 및 이용

- ①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료, 운행노선, 운행시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운전사는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며, 운행 전 이용자의 탑승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운전사는 매일 1회 첫 운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 ① 만 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운전사 또는 시설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탑승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등) 경로 이·미용비는 고창관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의 지원금은 60,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1매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이·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3. (생 략)	제3조(지원내용 등) ----- ----- ----- 1. ----- ----- <u>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u> -----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매년 초 1회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 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 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장은 <u>고창사랑상품권을</u> ----- ③ <u>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한다.</u>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주민복지실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① ----- <u>사회복지과장</u> ----- ----- ----- ② <u>매년 말 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u>
제10조 (생 략)	제10조(준용) <u>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u>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고창군 조례 제 2476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이 설치한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세미나실, 무대공연장, 족구장, 배구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269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력배치 및 교육)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종사자에 대하여 성별·연령층·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 년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승인)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그 밖의 기타활동

④ 유스호스텔을 청소년 외의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 ①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 또는 회의를 목적으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감면)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2조(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2.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3.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4.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안전수칙) 군수는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소지한 귀중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8조 관련)

구 분	이 용 료(원)				수용인원(명)	비 고
	학 생		성 인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7.1~8.31), 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7.1~8.31), 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50평형(단체)	200,000	230,000	230,000	250,000	12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단체)	150,000	180,000	180,000	200,000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별실) *1객실 기준	50,000	70,000	70,000	100,000	5	운곡5동 운곡6동
세미나실 *1시간 기준	10,000	20,000	20,000	30,000	80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2:00까지 한다.
 ※ 객실 수용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관내 다자녀 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단, 1년 2회 이내로 하고,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용료 50%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이용료 30%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30%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료 10% → 고창사랑상품권지급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별표 4]

유스호스텔의 안전수칙(제14조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비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 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 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구분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객실								
이용시설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								
이용요금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제출서류	행사계획 1부
------	---------

[별지 제2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구분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용객실								
이용시설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이용목적								
이용기간								
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								
<p>「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창 군 수 직인</p>								

[별지 제3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	승 인 년 월 일	신 청 인 (개인, 단 체명)	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	이 용 기 간	이 용 자 구 분		이 용 료	결 재		
						남	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귀 중 품 보 관 수 불 대 장

연 번	물 품 인 계 인 수		인 수 자 확 인	물 품 보 관 청 구 자 인 적 사 항			보 관 물 품 명	비 고
	인 계 일 시	인 수 일 시		성 명	호 실	주 소		

고창군 조례 제 2477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 2.“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 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1.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책가방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3. 독서활동 기회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 4. 국 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제4조 제1호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대학교(전문대이상)에 진학한 학생
- 2. 제4조 제2호는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 3.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는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지원신청) 학생복지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서

(대학 진학 축하금, 초등학생 책가방지원사업, 책드림사업, 기타 학생복지사업)

지 원 사업명						
지 원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진학학교명)	학 교		학 과		
	출 신 학 교	고등학교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계 좌 번 호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졸업증명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 5. 기타(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성 명 : (보 호 자 :)

주 소 :

상기 본인은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및 자택전화번호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고 창 군

20

학 생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조례 제 2478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팀장으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조례 제 2479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 사업”이란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지면적 300,000㎡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지가 위치한 읍면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기관·단체에 주민 체육 및 복지행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체육·복지시설의 설치
- 2. 농업·생활환경 등 지역개발시설의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고창군 기획예산담당관
- 2. 고창군 상생경제과장

3.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주민 대표는 2명 이상을,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민 대표 나.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요약·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조례 제 2480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 127조 및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대사업장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임대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장별 4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④ 임대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⑤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업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수 있다.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관내 300명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농업기계 구입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유선)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고,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고창군 농업인 이거나 경작지가 고창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별지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③ 1농가에 1회당 기종별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농업기계 수요상황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사고대비) ① 임대농업기계 운반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장의 운송 장비와 인력 범위내에서 임대농업기계를 마을회관까지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송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및 기타비용)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고창사랑상품권 등 결제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수입증지용 자동인증기로 수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임대 신청한 사람이 농업기계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여 사용일이 남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농업기계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청소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임대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또는 임대계약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기계를 3회 또는 3일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업기계 임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농작업의 대행)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고령경작자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작업 대행료 및 농작업의 범위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및 여성농업인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유관기관·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3. 농업인
4.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행일:2020.01.01.)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원
18) 5,000만원 이상	179,000원

단, 콩정선선별기는 40kg 선별에 1,000원으로 하며 농업기계 상,하차를 위한 사다리는 무

료로 한다.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으로써 사용 중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으로써 사용 중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으로써 사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종류				
	기간							
<p>「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p>								
<p>고창군수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 <p>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기계 임대 및 수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다만, 농업기계 임대 대상이 아닐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 background-color: #d9e1f2;">동의함</td> <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25%; background-color: #d9e1f2;">동의하지 않음</td> <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고창군수 귀하</p>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내역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사 용 료	원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m ² (지번 :)				

농업기계 임대계약 조건

1. 임대한 농업기계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 임대 기간 중 소모되는 운반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 임대기간 중 도난, 파손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 임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계약 종료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6. 임차인이 임의로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7.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1조 관련)

농업기계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감면사유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감면 승인서(제11조 관련)

감 면 대상자	주 소	
	성 명	
임대내역	농업기계명	
	형 식	
	기대번호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납 부 액	원	
감 면 액	원	
감면사유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반환 청구서(제12조 관련)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액		
납부일		
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금융기관명	
입금계좌	계좌번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작성요령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예금주 성명이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제23조 관련)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업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제23조 관련)

월일	부과 및 징수대상자			대여기종 및 납부금액				감면 면제 반환 금액	결 재		
	성명	주 소	생년 월일	대여 기종	대여 일수	부과 금액	납부금 액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8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제23조 관련)

월일	임차인현황			제한사유	제한일	해제일	결 재		
	성명	주 소	생년 월일				담당자	팀장	과장

고창군 조례 제 2481 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어린이·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청소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2.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고창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 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의회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학생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학교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정하여 제출한다.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의장은 군 “어린이·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규칙 제 1149 호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지정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고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제8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청을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표

항목	심사자료	세부 기준	점수
		계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이 없는 경우(40점)	
		- 영업정지일이 총 91일 이상인 경우: 감점 15점 - 영업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영업정지일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감점 1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회): 감점 10점	
		-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10점	
서비스제공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10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교육계획 등 수립 여부(10점)	
자원관리의 체계성(20점)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등기부등본, 차입금사전신고서 제출여부 및 부채상환 계획 등)(5점) - 적립금(운영총당적립금, 환경개선총당금, 퇴직적립금등)운용계획이 적정한지 여부(가입 상품 약관등 상세내용 확인)(5점) - 지역 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주체와의 연계(5점) - 이용자 확보 계획, 급여제공계획 등(5점)	
인력관리의 체계성(20점)	사업계획 및 인력현황 등	- 요양인력 중 상근인력 비율(5점) - 요양인력의 임금 수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등을 기준으로 판단)(5점) - 신규요양인력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5점) - 요양인력의 4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제도 운영 계획 등(5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고창군 규칙 제 1150호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별표 1 중 부군수 승용(전용)의 차형란을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으로 한다.

별표 2 중 군본청의 차형별 대형승용차란 중 “1대(군수전용)” 를 “2대(군수전용 1대, 부군수전용 1대)” 로 하고 중형승용차란을 “2대(부군수전용 1대, 업무용 1대)” 를 “1대(업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생 략)</p> <p>④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전원이 없는 단위기관의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원으로 하자가 없는 공무원을 운전원으로 지정하여 차량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5조(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차 종</th> <th style="width:20%;">차 형</th> <th style="width:30%;">배정대상</th> <th style="width:40%;">내구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승 용 (전 용)</td> <td>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td> <td>○ 군 수 ○ 군의회의장</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의 차 량을 말한다)</td> <td>○ 부군수</td> </tr> </tbody> </table> <p>(이하 생략)</p>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	○ 군 수 ○ 군의회의장	(생략)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의 차 량을 말한다)	○ 부군수	<p>[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차 종</th> <th style="width:20%;">차 형</th> <th style="width:30%;">배정대상</th> <th style="width:40%;">내구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승 용 (전 용)</td> <td>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td> <td>○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같음)</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p>(현행과 같음)</p>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	○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	(현행과같음)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	○ 군 수 ○ 군의회의장	(생략)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의 차 량을 말한다)	○ 부군수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 의 차량을 말한다)	○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	(현행과같음)																																		
<p>[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5%;">구 분</th> <th rowspan="2" style="width:10%;">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th> <th rowspan="2" style="width:5%;">기준 정수</th> <th colspan="3" style="width:60%;">차 형 별</th> </tr> <tr> <th style="width:15%;">대형 승용차</th> <th style="width:15%;">중형 승용차</th> <th style="width:30%;">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 용 및 업무용</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군본청</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u>군수전용</u>)</td> <td style="text-align: center;">2대 (<u>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1대</u>)</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대</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1대 (<u>군수전용</u>)	2대 (<u>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1대</u>)	3대	(이하생략)			<p>[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5%;">구 분</th> <th rowspan="2" style="width:10%;">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th> <th rowspan="2" style="width:5%;">기준 정수</th> <th colspan="3" style="width:60%;">차 형 별</th> </tr> <tr> <th style="width:15%;">대형 승용차</th> <th style="width:15%;">중형 승용차</th> <th style="width:30%;">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 용 및 업무용</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군본청</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2대 (<u>군수전용</u>)</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u>업무용</u>)</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대</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2대 (<u>군수전용</u>)	1대 (<u>업무용</u>)	3대	(현행과 같음)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1대 (<u>군수전용</u>)	2대 (<u>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1대</u>)	3대																																
			(이하생략)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2대 (<u>군수전용</u>)	1대 (<u>업무용</u>)	3대																																
			(현행과 같음)																																		

고창군 규칙 제 1151 호

고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2조(「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장부의 기장)” 을 “(장부의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서한다” 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한다” 를 “회계처리한다” 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기장한다” 를 각각 “기록한다” 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 을 각각 “기록” 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을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고계리” 를 “재고회계처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주서하여” 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기장” 을 “기록” 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119조제3항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121조 본문 중 “계리시는” 을 각각 “회계처리시는” 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158조 중 “월말계리상황보고서” 를 “월말회계처리상황보고서” 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기장되지” 를 “기록되지” 로 한다.

제173조제1항 전단 중 “기장한다” 를 “기록한다” 로 한다.

제3조(「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생 략)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 로 따로 <u>계리</u>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 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 당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u>회계처리</u> ----- -----.

2.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 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u>기장</u> 하여 야 한다.	제12조(장부의 기록) ----- ----- ----- <u>기록</u> -----.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생 략)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 하고 “공란”이라 <u>주서</u> 한다. ③ ~ ⑥ (생 략)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 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u>기장</u> 의 근거 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 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생 략)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 ----- <u>기록</u> ----- ----- -----.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 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 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 고 재무회계상으로만 <u>계리</u> 한다. 1. ~ 6. (생 략)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 출) ----- ----- ----- - <u>회계처리</u>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생 략)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현행과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생략)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른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59조(사업·자본예산지출 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같음)

② -----

----- 기록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록한다.

제59조(사업·자본예산지출 관련절차 및 기장) ① ----- 기록한다.

② -----

----- 기록-----.

③ -----

----- 기록-----.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회계처리-----

-----.

② (생 략)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장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 등) ①·② (생 략)

③ 서손·오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주서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생 략)

②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생 략)

제117조(출고절차) ①·② (생 략)

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따른 출고전표 별지 제66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 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장한다.

④·⑤ (생 략)

제11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② (생 략)

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록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
 -.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록 -----
 ---.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출고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록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채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장한다.

④ (생 략)

제121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될 때에는 이 동평균법 계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계리시는 재고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 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해당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채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29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게 기장한다.

② (생 략)

제158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따른 매월의 원가및 성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계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68조(월말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

----- 기록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환입품) -----

회계처리시는 -----
-- 회계처리시는 -----

-----.

제129조(재고의 수정) ① -----

----- 기록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8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보고) -----

----- 월말회계처리상황보고서 -----
-----.

제168조(월말결산절차) -----
-----.

1. (현행과 같음)
2. ----- 기록되지 -----

<p>개선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 반분개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 성한다.</p> <p>3. ~ 7. (생 략)</p> <p>제173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 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u>기장한다</u>. 이 때에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 납)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p> <p>②·③ (생 략)</p>	<p>----- -----.</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173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 ----- ----- ---- <u>기록한다</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3.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3. (생 략)</p> <p>4. <u>음식물의 섭취와 꺽연</u></p> <p>5.·6. (생 략)</p> <p>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3. (생 략)</p> <p>4. <u>음식물의 섭취나 꺽연행위</u></p> <p>5. ~ 8. (생 략)</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u></p> <p>5.·6. (현행과 같음)</p> <p>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u></p> <p>5. ~ 8. (현행과 같음)</p>

고창군 규칙 제 1152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각각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여러 사람”을 “다수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그 밖의”를 “기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의 규정”으로, “예정일 전 6개월”을 “예정일전 6월”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범위”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일정한”을 “소정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제6조”를 각각 “제6조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제6조”를 각각 “제6조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여러 사람)”을 “(다수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공무원수당”을 각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으로, 같은 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영 제29조제4호”를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를 “제10조제3호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9조제5호”를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이”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2조”를 “영 제12조의 규정”으로, “따른,”을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이”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규칙 제11조”를 “규칙 제1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따라 선순위자”를 “의하여 선순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2항 중 “영 제33조제9항이”를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영 제7조의4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제26조”를 “제2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영 제33조”를 “영 제33조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p> <p>②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u>여러 사람</u>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p> <p>③ (생 략)</p> <p>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생 략)</p> <p>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u>그 밖</u>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p> <p>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u>법 제27조제2항</u>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p> <p>⑤ 임용권자가 <u>제1항부터 제4항까지</u>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p> <p>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u>제대군인</u>지원에 관한 법률 <u>제16조제2항</u>에 따라 전역 <u>예정</u>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p>	<p>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신규임용시험</u> ----- ----- ----- ----- ----- -----.</p> <p>② <u>신규임용시험</u> ----- ----- ----- ----- -----.</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다수인</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기타</u> ----- ----- -----.</p> <p>④ ----- <u>법 제27조제2항의 규정</u>----- ----- -----.</p> <p>⑤ -----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u>----- ----- -----.</p> <p>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 <u>제16조제2항의 규정</u>----- <u>예정일전 6</u> <u>월</u>----- -----.</p>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③ (생략)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생략)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③ (생략)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한다.

- ② (생략)
-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 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범위 안-----.

- 1.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 소정의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제3호의 규정 -----

- ② ----- 제6조의 규정-----
-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③ ----- 제6조의 규정-----

----- 따른

----- 따르고----- 아니

한 -----

④ -----

-- 제6조의 규정-----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6조의 규정-----

⑦ 제1항 내지 제3항 ----- (다수인)-----

⑧·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같은 -----

② ----- 제1항의 규정-----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생략)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 -----
----- .

<삭제>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3.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 따라 -----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
----- .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
----- .

③ ----- 제10조제3호의 규정-----
----- .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
----- .

<삭제>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 (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생략)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

<삭 제>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 따르고,

-----.

② ----- 사람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 규칙 제11조의 규정-----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

-----.

<p>제26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p> <p>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p> <p>제3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생략)</p> <p>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p>	<p>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p> <p>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p> <p><삭 제></p> <p>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제2항 ----- 제26조의 규정----- -----.</p> <p>제3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영 제33조의 규정----- -----.</p>
--	---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입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 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야 금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잠 업	<p>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 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안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원소취급사(특수) 방사선조사(5) 임상심리사(7)	임상병리사(8) 보건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원소취급사(일반)(3) 방사선조사(3) 임상심리사(3)	임상병리사(5) 보건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원소취급사(일반) 방사선조사(일반) 임상심리사(3)	임상병리사(2) 보건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	임상병리사 보건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수의사(3) 약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약사(7) 위생사(12)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대 기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폐 기 물	1급(7)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 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 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 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 양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금형설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공 업			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 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 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 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 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 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 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 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 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 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 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 반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 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 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 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 물 검 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학)		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역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 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 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 삭제 <2019.08.06.>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단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기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기사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야 금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 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 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물 검 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 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p>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시설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중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조 경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산업기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수산자원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p>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수산공학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수산가공	<p>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p>	
보건연구	의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p>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직무분야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위위사	상 중 사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야 금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중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중·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공 화		섬 유
화 공			
화 학	화 공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업 환 경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화 학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잠 업 곤 충	농 업	잠 업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생 활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촌 사 회
		축 산	축 산
	농 공	공 업 설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조 업 경	전 직 류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해 양 수 산	수 산 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해 양 수 산	수 산 제 조
		어 촌 지 도	수 산 물 검 사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농 업 토 목
	건축		건축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령	도 직 류	기 직 령	술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경
	잠 업	농 업	잠 업
		농 업 연 구	잠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중 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상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월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월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 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7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 임 강 사 (2년이상)	전 임 강 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 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15] 삭제<2019.08.0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1.>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장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
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④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 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 소	⑦ 최종 출신 학교 명	⑧ 특기	⑨ 병열 필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 회	제2 회	제3 회	제4 회	제5 회	연월 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⑦ 선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년 월 일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 한 규격			
임용 예정 직명 :		(급 류)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9. 12.30(월)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간) 일							
	실지 수습 기간	· ~ · · (간) 일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계획서(제33조 관련)

1. 채용예정분야 :
2. 채용예정계급 :
3. 사업의 필요성
 -
4. 채용예정분야의 직무 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직무특성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필요지식
 -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경력조건
 - 요구자격증
 -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곤란도 등)

고창군 규칙 제 1153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30일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고창군규칙 제 8호(19. . .)

보통행정직	기관별		합계	본						총														외 회		
	행정소	지방사무소		본청	의정	직속	사업	등	소계	농생명직	농어촌직	해양수산	축산	상생경제	재난안전	건설도시	문화예술	문화유산	사회복지	중화민원	생태환경	상왕공원	재우		물리행정	기획예산
총	계		778	377	17	132	49	208	377	17	17	25	18	22	22	30	24	22	30	25	25	18	28	31	23	17
정	무	직	1	1					1															1		
정	무	직	1	1					1															1		
정	무	직	1	1					1															1		
합	계		733	370	17	94	49	208	370	17	17	25	18	22	22	30	22	20	30	25	25	18	28	28	23	17
4급	소	계	3	3					3	1							1							1		
4급	정		1	1					1																1	
4급	기술		2	2					2	1							1									
4-5급	소	계	2			1		1																		
5급	보안	간	1			1																				
5급	보안	기술	1					1																		
5급	보안	기술	1					1																		
5급	소	계	36	16	3	1	3	18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별표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고창군 규칙 제 호(19. .)

계	부	과	직	명	총		정		분																										
					정	보	정	보	소	농	농	해	축	상	재	건	문	문	사	중	생	상	재	공	기	의									
			행정	31	26	3		2	26		1					2	1	1	2	1						1	1			3	6	7	3		
			세무	3	3				3																										
			건설	1	1				1																										
			사회복지	19	4			15	4																										
			사서	1	1				1										1																
			농업	3	3				3		3																								
			복지	2	2				2																										
			해양수산	5	5				5																										
			시업	13	10			2	1	10																									
			역업	1	1				1																										
			시설관리	3	1			2	1																										
			문화관광	12	5	1	1	1	4	5																									
			문화관광	1	1				1																										
			행정·세무	4	4				4																										
			행정·건설	3	3				3																										
			행정·사회복지	6	4				2	4																									
			행정·사서	2	2				2																										
			행정·공업	3	1		1	1	1																										
			행정·농업	6	4		2		4																										
			행정·해양수산	4	4				4																										
			행정·보건	1			1																												
			행정·관광	1	1				1																										
			행정·시업	17	16			1	16																										
			농업·수의	5	5				5																										
			환경·공업	1	1				1																										
			행정·건설·문화관광	1	1				1																										
			행정·공업·관광	2	1			1	1																										
			행정·농업·복지	36					36																										
			행정·농업·복지	3	2				1	2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업	3	2				1	2																									
			행정·보건·시설관리	1			1																												
			행정·시업·문화관광	1	1				1																										
			행정·보건·문화관광	2	2				2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22			22																												
			농업·수의·환경·공업·행정·보건·문화관광·시업·해양수산	11	4			7	4																										
			합 소 계	198	100	5	34	14	45	100	4	5	7	4	7	6	7	7	5	10	7	8	4	8	6	5									

[별표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고창군 규칙 제 호(19. . .)

직종명	직급명	직명명	직속기관			사 업 소				면														
			소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계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험사업소	소계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우정면	공음면	상해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상평면	흥덕면	성내면	신평면	부안면
총 계			132	84	48	49	16	18	15	203	30	13	13	14	13	13	14	13	14	13	14	13	13	13
정무직 소계																								
일반직 소계			94	84	10	49	16	18	15	203	30	13	13	14	13	13	14	13	14	13	14	13	13	13
4급 소계																								
장																								
정장·기술																								
4-5급 소계			1	1						1	1													
공무·일반·기술·행정·사무·지·농림·시			1	1						1	1													
5급 소계			1	1		3	1	1	1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군 고시 제 2019 - 145호

고수 연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수 연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7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9일

- 1. 사 업 명 : 고수 연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3. 사 업 비 : 468백만원(국비 328 군비 140)
-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일원
 - 권역규모 : 법정리 1
 - 면 적 : 112ha
 - 가구·인구 : 43호, 인구 60명
 - 지역경관개선 : 고인돌 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고인돌 샘터정비, 연꽃방죽정비
 - 지역역량강화
- 5. 변 경 사 항 : 사업량 증감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 6.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 6. 사업시행기간
 - 2017. 1. ~ 2019. 12.
-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724)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0)

8.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468,000	468,000	468,000	-	
국 비	328,000	328,000	328,000	-	
지방비	140,000	140,000	140,000	-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기승인	금회승인	증(△)감	
합 계	468,000	468,000	468,000	-	
○ 공사비	309,430	323,668	323,668	-	
-지역경관개선	261,430	313,668	313,668	-	
-지역역량강화	48,000	10,000	10,000	-	
○ 자재대	98,570	80,137	80,320	183	
○ 용지매수비	-	-	-	-	
-용지매수	-	-	-	-	
-보 상	-	-	-	-	
○ 관리비 등	60,000	64,195	64,012	△183	
-측량설계비	23,077	23,586	23,586	-	
-공사감리비	29,126	32,611	32,834	223	
-사업관리비	6,305	6,798	6,765	△33	
-잡 지 출	1,492	1,200	827	△373	

고창군 고시 제 2019 - 146호

삼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삼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삼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50 군비 150)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일원
- 권역규모 : 법정리 1
- 면 적 : 430ha
- 가구·인구 : 31호, 인구 67명
- 경관개선 : 왕버들나무숲 수변조성, 쌈지공원 조성, 마을우물터 복원
- 역량강화 : 교육, 홍보 및 마케팅지원,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변경사항 : 사업시행기간연장

○ 당 초 : 2018. 01. ~ 2019. 12.

○ 변 경 : 2018. 01. ~ 2020. 12.

○ 사 유 : 도지정문화재(하고리 왕버들나무숲)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724)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29)

고창군 고시 제2019 - 15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 합니다.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km ²)		
구수	공음면 구암리	침수위험	나	0.309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4.02.11
건동	공음면 건동리	침수위험	나	0.449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5.03.06

- 아 래 -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도면 각 1부.

2019년 12월 12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고시 제2019-159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일

1.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구분	사업의 명칭 및 종류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금회시행	무장면 소재지 도로 개설공사	중로2-308호 선	무장면 무장리 551-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38m B=15m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021.12.31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성명 : 고창군수
		중로2-309호 선	무장면 무장리 705번지 일원	도로개설 L=186m B=15m		
		교통광장 (32호)	무장면 무장리 548-1번지 일원	광장 조성 A=2,130㎡		
		교통광장 (33호)	무장면 무장리 462-2번지 일원	광장 조성 A=1,260㎡		
		교통광장 (34호)	무장면 무장리 40-2번지 일원	광장 조성 A=1,330㎡		

2.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당초	분할 예정								
1	고창	무장	무장	543-1	543-5	답	2,245.0	313.5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동서로 3	김천중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포일동) (고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근저당 권
2	고창	무장	무장	544-4	544-9	답	581.0	89.0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544	박경수			
3	고창	무장	무장	544-5	544-10	답	736.0	225.5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544	박경수			
4	고창	무장	무장	551-1	551-9	답	9,196.0	846.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18-4 제일아파트 101-804	김선옥			
5	고창	무장	무장	700	700-4	답	3,436.1	1,266.6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대장용산길 18	김석기	고창군 고창읍 남정9길 12-1	진은선	채무자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40	삼광신용협동조합	근저당 권, 지상권
6	고창	무장	무장	701	701-1	답	1,922.2	308.3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동리172-14, 103동 304호(성산아파트)	문재호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웰파크 지점)	선운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권
7	고창	무장	무장	702	702-1	답	1,300.0	35.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637 주공아파트 1302-1506	김성학			
8	고창	무장	무장	703	703-2	답	1,808.0	877.7	광주광역시동구재로23-8101동519호 (학동,아남아파트)	김은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주)하나은행	근저당 권
9	고창	무장	무장	704	704-2	답	2,033.9	629.1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동리172-14, 103동304호(성산아파트)	문재호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선운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권, 지상권
10	고창	무장	무장	548-3	548-3	대	520.0	520.0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59-5	표장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당초	분할 예정			지 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1	고창	무장	무장	550	550	답	69.0	69.0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107-1	김성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서초헤미안 아파트 106동 701호	이동원			가압류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3-19 기산빌라트 101호	염성철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 아파트 34동 508호	김남용			가압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16 모양연립 201호	공경순			가압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56-4	양삼수			가압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56-4	변귀복			가압류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74-4	무장신용 협동조합			가압류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21	박수정			가압류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276-2	정만택			가압류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30	무장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349	김재명			가압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	고창	무장	무장	551-5	답	1,931	374.6		전라북도		
13	고창	무장	무장	551-8	답	181	11.4		전라북도		
14	고창	무장	무장	548-5	도	735	168.7		전라북도		
15	고창	무장	무장	548-1	도	539	403.1		고창군		
16	고창	무장	무장	699-2	도	2,157	198.2		국(건설부)		
17	고창	무장	무장	431-1	학	53,345	129.2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431-1	학교법인 무송학원		
18	고창	무장	무장	548-7	대	194	189		전라북도		
19	고창	무장	무장	431-3	학	99	10.9		전라북도		
20	고창	무장	무장	431-2	도	66	13.9		고창군		
21	고창	무장	무장	730	구	1,032	366.6		국(농림부)		
22	고창	무장	무장	462-3	도	1,785	254.9		고창군		
23	고창	무장	무장	462-2	도	288	102.3		고창군		
24	고창	무장	무장	696-1	도	1,515	84		국 (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5	고창	무장	무장	455	도	343	31		고창군		
26	고창	무장	무장	460-3	도	28	9.2		고창군		
27	고창	무장	무장	705	답	1,836	293.7		고창군		
28	고창	무장	무장	705-1	도	1,001	959.1		고창군		
29	고창	무장	무장	731	구	2,248	113.7		국(농림부)		
30	고창	무장	무장	732	구	1,295	73.2		국(농림부)		
31	고창	무장	무장	710	대	4,683	710		고창군		
32	고창	무장	무장	709	대	2,602	254.9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연 번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군	읍·면	리	지번 (분할지번)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창	무장	무장	548-3	주택및점포	철근콘크리 트조 스라브	180m ²					
					주택	벽돌조 스레트	36m ²					
					계단		1식					
					대문		1식					
					담장		20m					
					관정		1식					
					대추나무		4주					
					매실나무		1주					
					동백나무		1주					
				오동나무		1주						
2	고창	무장	무장	551-1 (551-9)	관정		1식					
3	고창	무장	무장	544-4 (544-9)	감나무		8주					
					복숭아		1주					
					드릅나무		20주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사명 :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연 번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군	읍·면	리	지번 (분할지번)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고창	무장	무장	544-5 (544-10)	모과나무		1주					
					고엽나무		2주					
					꾸지뽕나무		5주					
					포도나무		1주					
					아로니아		72주					
5	고창	무장	무장	431-1	단풍나무		2주					
					백일홍		9주					
					동백나무		1주					
					벗나무		3주					
6	고창	무장	무장	442-3	삼나무		7주					
					소나무		15주					
					이팝나무		5주					
					팽나무		1주					
					목련		1주					
				느티나무		1주						

고창군 고시 제2019-160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68호)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고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3-168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12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2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68호)
 - 명 칭 : 고창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159m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 : 게재생략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	리	지번 당초	지번 분할			지 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고창	고창	읍내	518-68	518-68	전	163.0	163.0	고창군 고창읍 월곡10길 14	최미자			
2	고창	고창	읍내	526-3	526-3	전	273.0	273.0	고창군 고창읍 교촌2길 14(블루빌 301호)	오연권			
3	고창	고창	읍내	529-1	529-1	전	62.0	62.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54-2, 에이동 201호	임은아			
4	고창	고창	읍내	525-2	525-6	전	1,617.0	206.0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64-9	서방식			공유자
									고창군 무장면 만화리 461	이해영			공유자
5	고창	고창	읍내	525-1	525-4	전	1,260.0	16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3-23, 아카시아 맨션 나-201	임양희			공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21-5	홍경선			
6	고창	고창	읍내	538	538-3	전	842.0	103.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안길 19-8	김성중			
7	고창	고창	읍내	542-12	542-18	학교	1,413.0	32.0	-	전라북도 교육감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편입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군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고창	고창	읍내	518-68		창고	철파이프	56㎡					
						울타리	천막	12㎡					
						바닥포장	능형망	35㎡					
						소나무	콘크리트						
						철쭉		1주					
2	고창	고창	읍내	518-68, 526-3		화단		3주					
						소나무		1식					
3	고창	고창	읍내	526-3 번지 등		매실나무		4주					
						대추나무		1주					
						화살나무		2주					
						석류나무		6주					
						헛개나무		1주					
						목련		1주					
						앵두나무		1주					
무화과		1주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군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고창	고창	읍내	525-1		사과나무		3주					
5	고창	고창	읍내	538		복분자		120㎡					
						차고	컨테이너	1식					

고창군 공고 제 1609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고 창 군 수

1. **조례명** :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저소득층이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 확보와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7조)

라.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관리(안 제8조 내지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사회복지과장, 전화 063-560-2282, 팩스 063-560-2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우편번호:56428)
- 전화번호 : 063-560-2282 (팩스: 063-560-2299)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19 - 1622호

공인의 신조 공고

고창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동
조례 제8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고 창 군 수

1. 공인의 신조 사유 : 인사위원회 및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신조 개각
2. 최초 사용일 : 2019. 12. 13.(공고 후)
3. 공고기간 : 2019. 12. 6. ~ 2019. 12. 12. [7일간]
4. 공인명 및 인영 : 아래 별첨

공인 신조 내역

□ 공인 신조 내역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 체	규 격(cm)	재 질	비 고
신 조	고 창 군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인		판소리 춘향가체	2.7×2.7	벽조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조 개각
신 조	고 창 군 공무직근로자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판소리 춘향가체	2.7×2.7	벽조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조 개각
신 조	재 단 법 인 고 창 군 장 학 재 단 이 사 장 인		판소리 춘향가체	2.7×2.7	벽조목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신조 개각

고창군 공고 제 2019-1638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따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

고 창 군 수

1. 열람사항 :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1	109	10	보조간선도로	4,315 (2,470)	대로3-101 월곡리157-2	중로1-국23E 와촌리산2-1	일반도로	노지 동수	고창고 제40호 (2011.08.19.)	고창
변경	소로	1	109	10	보조간선도로	4,308 (2,470)	대로3-101 월곡리157-2	중로1-국23E 와촌리산2-1	일반도로	노지 동수	고창고 제40호 (2011.08.19.)	고창

주 : 연장 (2,470)m = 도시지역 도로연장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09	소로1-109	· 도로변경 B= 10m (변경없음) L=4,315m ⇒ 4,308m, 감)7m	·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2. 위 치 : 전북 고창군 월곡리 157-2번지 ~ 고수면 와촌리 산2-1번지 일원

3. 열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내용 :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안” 도서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고창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Tel. 063-560-2563, Fax. 063-560-2579)

6. 관계도서(입안도서 및 조서 등)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관계서류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651호

공인의 신조 공고

고창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동
조례 제8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고 창 군 수

1. 공인의 신조 사유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신조 개각
2. 최초 사용일 : 2019. 12. 20.(공고 후)
3. 공고기간 : 2019. 12. 13. ~ 2019. 12. 19. [7일간]
4. 공인명 및 인영 : 아래 별첨

공인 신조 내역

□ 공인 신조 내역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 체	규 격(cm)	재 질	비 고
신 조	고 창 군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출 납 원 인		판소리 춘향가체	2.7×2.7	벽조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신조 개각
신 조	고 창 군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운 용 관 인 인		판소리 춘향가체	2.7×2.7	벽조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신조 개각

고창군 공고 제2019 - 168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호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고 창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m²)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정 면적	기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45,225	45,225	45,225		
제1종 수원 함양 보호 구역	고창	고수	평지	530-1	묘	919	919	919	진주정씨가상공 성사파중중	성수면 계당리
	고창	고수	두평	220-4	대	510	510	510	김순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고창	고수	두평	220-9	대	106	106	106	김순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고창	고수	두평	936-2	전	1,254	1,254	1,254	최낙건 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고창	고수	두평	936-3	답	8,487	8,487	8,487	최낙건 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고창	고수	두평	936-4	전	561	561	561	최낙건 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고창	공음	두암	산132-1	도	1,112	1,112	1,112	고창군	-
	고창	해리	왕촌	256-9	대	777	777	777	신동원	전북 고창군 해리면 팔형치길
	고창	흥덕	치룡	338-5	전	2,664	2,664	2,664	이재길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고창	흥덕	신송	354-3	전	28,104	28,104	28,104	박봉순	전북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고창	흥덕	석우	275-4	전	543	543	543	오양석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길
	고창	성내	옥제	407-11	대	188	188	188	원점순	전북 고창군 성내면 외옥길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창군 산림공원과(☎063-560-260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이의신청서(서식)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필지내역 1부.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530-1번지



범 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고수면 평지리 530-1	묘	919	919	919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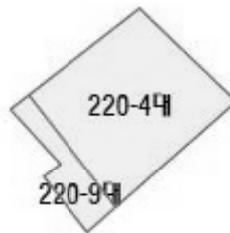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기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보호유형	세부유형	해제사
	도	시	읍	리					지	성명			

구	면동	번										유	
						45,225	45,225	45,225					
1	전북 고창 고수	평지-1	530	묘		919	919	919	진***중	성송면 계당리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2	전북 고창 고수	두평-4	220	대		510	510	510	김*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3	전북 고창 고수	두평-9	220	대	106	106	106	106	김*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4	전북 고창 고수	두평-2	936	전	1,254	1,254	1,254	1,254	최*건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5	전북 고창 고수	두평-3	936	답	8,487	8,487	8,487	8,487	최*건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6	전북 고창 고수	두평-4	936	전	561	561	561	561	최*건외2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7	전북 고창 공음	두압산-1	132	도	1,112	1,112	1,112	1,112	고창군	-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8	전북 고창 해리	왕촌-9	256	대	777	777	777	777	신*원	전북 고창군 해리면 팔형치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9	전북 고창 흥덕	치룡-5	338	전	2,664	2,664	2,664	2,664	이*길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10	전북 고창 흥덕	신송-3	354	전	28,104	28,104	28,104	28,104	박*순	전북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11	전북 고창 흥덕	석우-4	275	전	543	543	543	543	오*석	전북 고창군 월곡1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12	전북 고창 성내	옥제-11	407	대	188	188	188	188	원*순	전북 고창군 내면 외옥길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기간만료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220-4, 220-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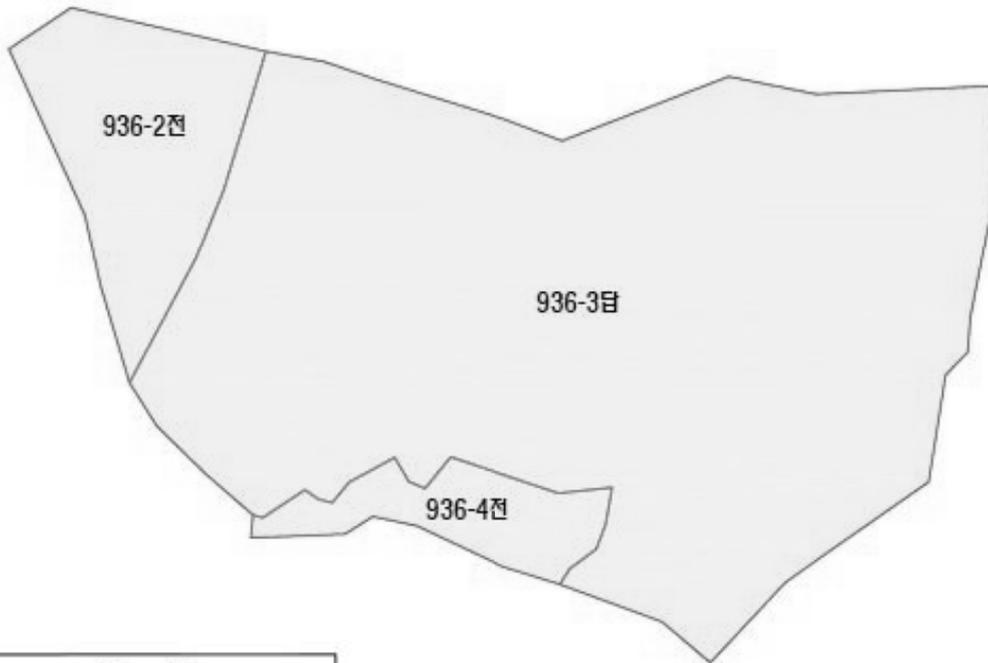
범 례	
해제대상지	<input type="text"/>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m ²)	기지정(m ²)	지정해제(m ²)
고수면 두평리 220-4	대	510	510	510
고수면 두평리 220-9	대	106	106	106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936-2, 936-3, 936-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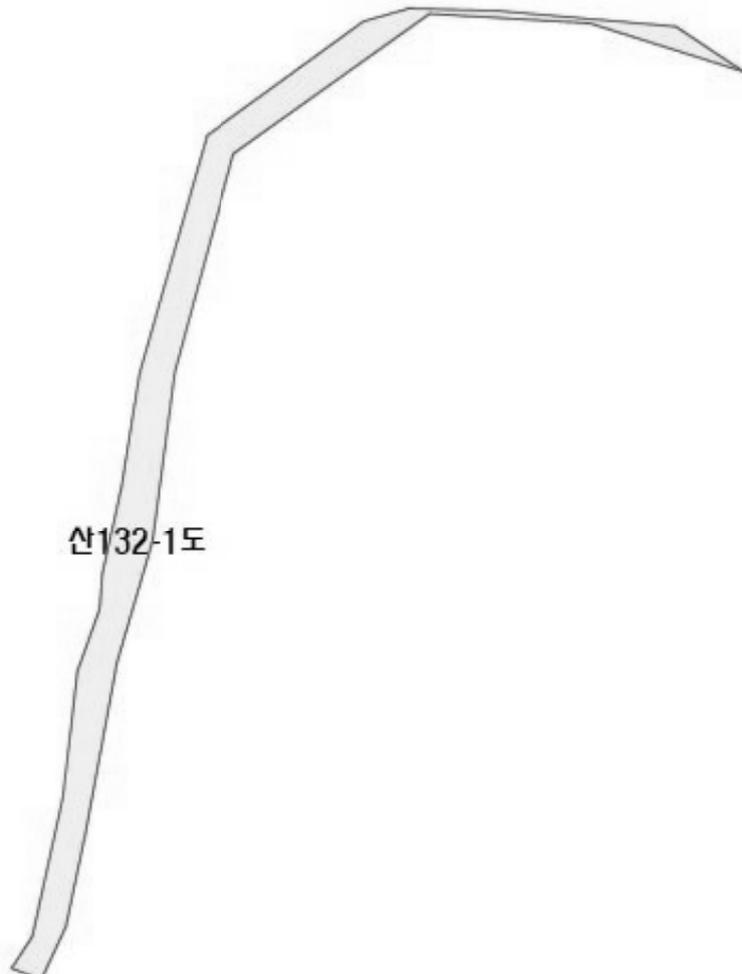
범 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고수면 두평리 936-2	전	1,254	1,254	1,254
고수면 두평리 936-3	답	8,487	8,487	8,487
고수면 두평리 936-4	전	561	561	56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산132-1번지



범 례	
해제대상지	<input type="text"/>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공음면 두암리 산132-1	도	1,112	1,112	1,11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256-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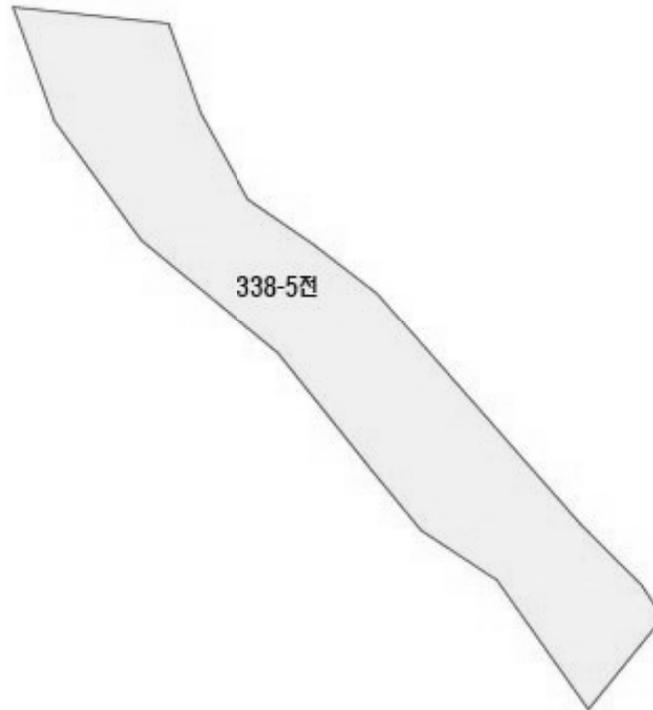
범 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m ²)	기지장(m ²)	지정해제(m ²)
해리면 왕촌리 256-9	대	777	777	77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338-5번지



범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흥덕면 치룡리 338-5	전	2,664	2,664	2,66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2,000

위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신승리 354-3번지



범 례	
해제대상지	<input type="text"/>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흥덕면 신승리 354-3	전	28,104	28,104	28,10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석우리 275-4번지



범 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흥덕면 석우리 275-4	전	543	543	54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1,000

위치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407-11번지



범 례	
해제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해제(㎡)
성내면 옥제리 407-11	대	188	188	18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²		
[]지정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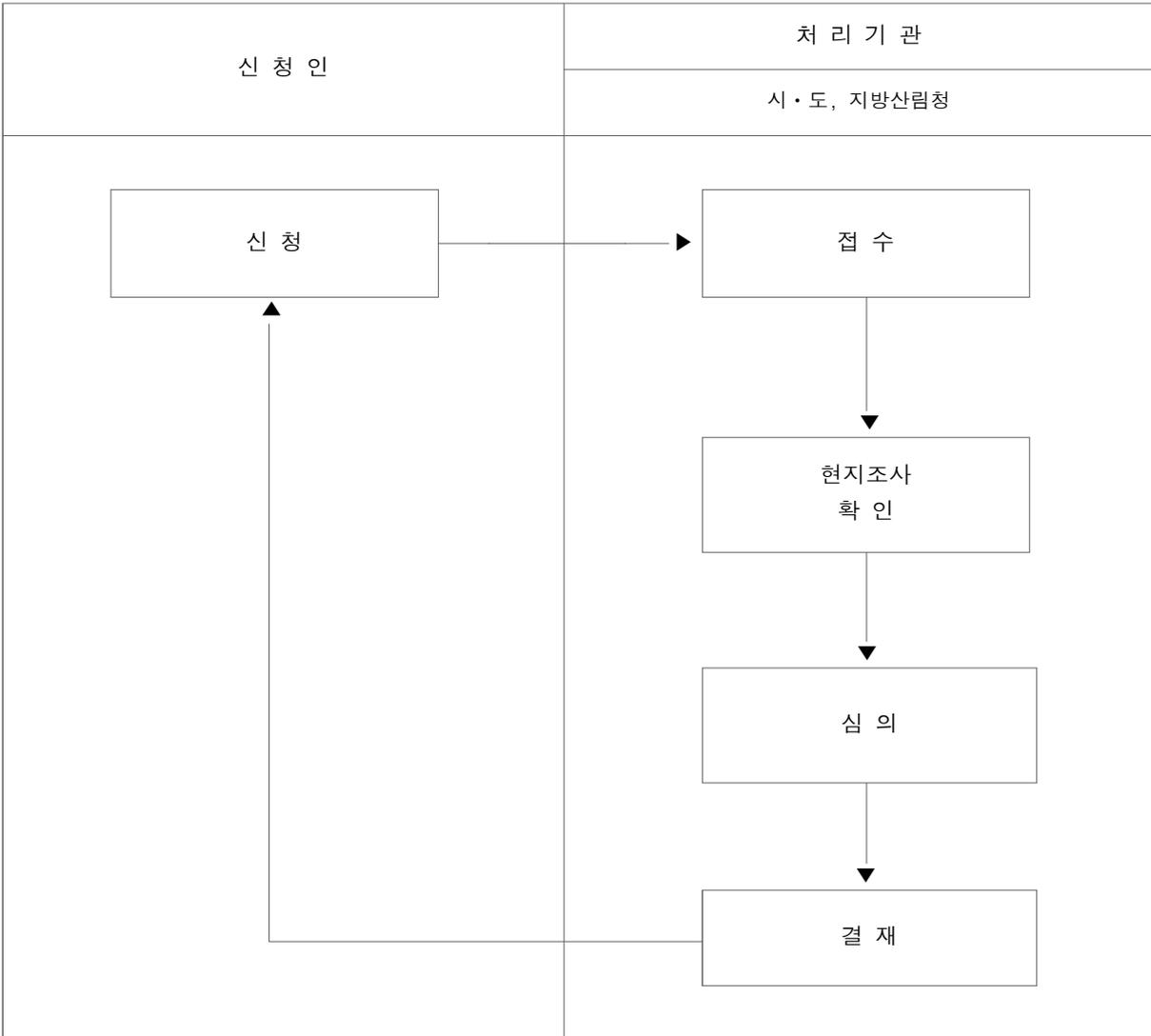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창군 공고 제 2019 - 1688호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신규작성 시행 공고

2019년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완료신고에 따라 종전토지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토지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 시행하였기에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9.12.18.~ 2020.01.01.(14일간)

2.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가.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사업명	토지 소재지	폐쇄(종전지번)		토지소재지	작성(확정)	
		지번수	면적(m ²)		지번수	면적(m ²)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부안면 중흥리	61	165,237	부안면 중흥리	51	164,678.3
	부안면 오산리	85	187,123	부안면 오산리	65	187,616.0
	부안면 수남리	51	134,908	부안면 수남리	45	135,749.5
계		198	487,268	계	210	488,043.8

3. 지적공부 열람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내

4. 전화문의

경지정리사업 완료신고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전화 : 560 - 2414)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토지 지번별조서(오산지구)

토지소재코드	대상구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소유자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4	0	02-답	2,677.0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5	0	02-답	3,916.00	1-개인	김현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6	0	02-답	1,075.00	1-개인	김현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7	0	02-답	2,913.00	1-개인	이권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8	0	02-답	3,923.0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299	0	02-답	643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0	0	02-답	1,204.0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1	0	02-답	1,979.00	1-개인	장필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2	0	02-답	2,220.00	1-개인	김범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3	0	02-답	1,665.00	1-개인	김범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4	0	02-답	3,844.00	1-개인	이기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5	0	02-답	3,983.0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6	0	02-답	1,006.00	1-개인	강성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7	0	02-답	2,305.00	1-개인	김용환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8	0	02-답	1,208.00	1-개인	김용환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09	0	02-답	2,535.00	1-개인	하귀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0	0	02-답	1,357.0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1	0	02-답	3,792.00	1-개인	김범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2	0	02-답	3,919.00	1-개인	유준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3	0	02-답	3,913.00	1-개인	김종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4	0	02-답	1,733.00	1-개인	김종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5	0	02-답	829	1-개인	김원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6	0	02-답	1,332.00	1-개인	김원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7	0	02-답	3,898.00	1-개인	김범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8	0	02-답	3,884.00	1-개인	김범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19	0	02-답	3,745.00	1-개인	서창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0	0	02-답	1,653.0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1	0	02-답	3,938.0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2	0	02-답	3,816.0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3	0	02-답	2,764.00	1-개인	백원석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4	0	02-답	1,076.00	1-개인	백원석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5	0	02-답	3,831.00	1-개인	백묘순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6	0	02-답	3,992.00	1-개인	이광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7	0	02-답	1,923.00	1-개인	김현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8	0	02-답	1,918.0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29	0	02-답	3,929.00	1-개인	강성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0	0	02-답	2,189.00	1-개인	김환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1	0	02-답	1,417.0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2	0	02-답	4,051.0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3	0	02-답	1,096.00	1-개인	이성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4	0	02-답	550	1-개인	이정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5	0	02-답	2,495.00	1-개인	조희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6	0	02-답	1,472.00	1-개인	조우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7	0	02-답	1,732.00	1-개인	조우용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8	0	02-답	2,305.00	1-개인	조수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39	0	02-답	4,595.00	1-개인	진복덕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40	0	02-답	4,205.0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41	0	02-답	3,935.0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42	0	02-답	2,710.0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44	0	02-답	5,325.00	1-개인	김경순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45	0	02-답	5,905.00	1-개인	김순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64	0	02-답	2,935.00	1-개인	김만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365	0	02-답	2,245.00	1-개인	김만균

고창군부안면 중흥리	8	417	2	14-도로	1,544.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18	3	18-구거	5,007.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18	4	18-구거	1,01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19	0	18-구거	8,12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20	0	14-도로	363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21	0	14-도로	654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22	0	14-도로	2,71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8	423	2	14-도로	2,314.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50	4	20-양어장	17	1-개인	황동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50	5	20-양어장	11	1-개인	황동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51	2	20-양어장	52	1-개인	황동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4	0	02-답	1,445.00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5	0	02-답	550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6	0	02-답	3,998.00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7	0	02-답	1,731.00	1-개인	채규홍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8	0	02-답	2,283.00	1-개인	김범정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49	0	02-답	4,030.00	1-개인	신연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0	0	02-답	3,129.00	1-개인	신연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1	0	02-답	842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2	0	02-답	1,972.00	1-개인	신희배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3	0	02-답	2,089.0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4	0	02-답	4,023.0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5	0	02-답	2,259.00	1-개인	강성길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6	0	02-답	885	1-개인	강병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7	0	02-답	4,295.00	1-개인	유준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8	0	02-답	3,900.00	1-개인	김범육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59	0	02-답	4,265.00	1-개인	최영열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0	0	02-답	1,354.00	1-개인	최영열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1	0	02-답	2,578.00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2	0	02-답	3,238.00	1-개인	김영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3	0	02-답	794	1-개인	최동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4	0	02-답	3,940.00	1-개인	최동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5	0	02-답	3,958.00	6-법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6	0	02-답	2,991.00	1-개인	권영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7	0	02-답	1,018.00	1-개인	권영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8	0	02-답	3,779.00	1-개인	강미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69	0	02-답	4,175.0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0	0	02-답	1,039.0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1	0	02-답	2,790.0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2	0	02-답	1,330.00	1-개인	한충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3	0	02-답	910	1-개인	한충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4	0	02-답	2,144.00	7-종중	신천송씨선양공파광세(찬)문중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5	0	02-답	1,895.0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6	0	02-답	3,925.0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7	0	02-답	1,159.0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8	0	02-답	2,737.00	1-개인	김기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79	0	02-답	3,947.00	1-개인	최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0	0	02-답	4,068.00	1-개인	진종호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1	0	02-답	2,338.00	1-개인	김재국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2	0	02-답	1,483.00	1-개인	김길홍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3	0	02-답	3,344.00	1-개인	고영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4	0	02-답	771	1-개인	고영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5	0	02-답	3,861.00	1-개인	정만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6	0	02-답	798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7	0	02-답	1,995.00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8	0	02-답	2,005.00	1-개인	김정숙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89	0	02-답	1,255.00	1-개인	윤만권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0	0	02-답	2,650.00	1-개인	박애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1	0	02-답	3,455.00	1-개인	이길동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2	0	02-답	2,600.0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3	0	02-답	1,985.00	6-법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4	0	02-답	3,795.00	1-개인	오순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5	0	02-답	950	1-개인	정만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6	0	02-답	2,110.00	1-개인	정만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8	0	02-답	3,708.0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299	0	02-답	2,835.0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0	0	02-답	1,035.0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1	0	02-답	2,220.0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2	0	02-답	1,840.00	1-개인	장재선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3	0	02-답	2,585.00	1-개인	장정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4	0	02-답	1,852.00	1-개인	장정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5	0	02-답	1,856.00	1-개인	윤덕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6	0	02-답	3,850.00	1-개인	서규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7	0	02-답	408	1-개인	황동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8	0	02-답	2,461.00	1-개인	박말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09	0	02-답	492	1-개인	정재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10	0	02-답	1,008.00	1-개인	정재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11	0	02-답	1,029.00	1-개인	이한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18	0	02-답	3,530.00	1-개인	김국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19	0	02-답	1,795.0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0	0	02-답	1,617.00	6-법인	재단법인세계기 독교통일신령협 회유지재단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1	0	02-답	790	6-법인	재단법인세계기 독교통일신령협 회유지재단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3	0	14-도 로	1,772.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5	5	18-구 거	84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5	10	18-구 거	3,34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5	13	18-구거	736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5	14	18-구 거	9,822.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6	0	14-도 로	1,74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8	4	14-도 로	1,190.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8	5	14-도 로	474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29	1	14-도 로	729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32	1	14-도 로	1,258.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8	333	0	14-도 로	117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07	0	02-답	2,119.0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08	0	02-답	2,050.00	1-개인	국영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09	0	02-답	2,335.00	1-개인	김선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0	0	02-답	3,735.00	1-개인	이춘자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1	0	02-답	3,925.0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2	0	02-답	3,495.0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3	0	02-답	3,938.0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4	0	02-답	2,276.0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5	0	02-답	2,425.0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6	0	02-답	1,055.00	1-개인	이의동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7	0	02-답	3,465.00	1-개인	이의동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8	0	02-답	3,725.00	1-개인	강성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19	0	02-답	1,100.0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0	0	02-답	1,925.00	1-개인	김범정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1	0	02-답	1,415.00	1-개인	김강윤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2	0	02-답	3,035.00	1-개인	김금순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3	0	02-답	1,800.0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4	0	02-답	2,224.0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5	0	02-답	3,965.0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6	0	02-답	1,820.0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27	0	02-답	1,236.0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수남리	8	533	0	02-답	4,030.0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4	0	02-답	2,655.0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5	0	02-답	3,122.00	1-개인	김강필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6	0	02-답	3,900.00	1-개인	이창연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7	0	02-답	1,764.00	1-개인	이창연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8	0	02-답	2,211.00	1-개인	김범순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39	0	02-답	3,995.00	1-개인	이춘자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0	0	02-답	3,886.0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1	0	02-답	3,578.0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2	0	02-답	644	1-개인	김낙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3	0	02-답	1,276.0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4	0	02-답	1,989.0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5	0	02-답	3,941.0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6	0	02-답	784	1-개인	하귀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7	0	02-답	3,875.0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8	0	02-답	3,922.00	1-개인	김범형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49	0	02-답	3,958.00	1-개인	김범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0	0	02-답	1,784.00	1-개인	김범곤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1	0	02-답	2,211.00	1-개인	강치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2	0	02-답	3,350.00	1-개인	이동헌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3	0	02-답	594	1-개인	강치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4	0	02-답	3,941.00	1-개인	강치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5	0	02-답	1,986.00	1-개인	이권근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7	0	02-답	3,008.0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8	3	18-구거	5,120.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59	2	14-도로	1,256.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60	2	18-구거	2,97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60	3	18-구거	3,09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61	0	14-도로	580	2-국유지	국(농수산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8	562	0	14-도로	2,415.00	2-국유지	국(농수산부)

확정토지 지번별조서(오산지구)

토지소재코드	대장구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소유자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28	0	02-답	2,636.4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29	0	02-답	3,934.90	1-개인	김선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0	0	02-답	1,073.20	1-개인	김선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1	0	02-답	2,962.00	1-개인	이권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2	0	02-답	3,836.7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3	0	02-답	1,866.1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4	0	02-답	2,014.70	1-개인	장필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5	0	02-답	2,173.50	1-개인	김범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6	0	02-답	1,629.00	1-개인	김범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7	0	02-답	3,951.60	1-개인	이기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8	0	02-답	4,053.7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39	0	02-답	1,034.90	1-개인	강성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0	0	02-답	2,362.90	1-개인	김용환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1	0	02-답	1,239.10	1-개인	김용환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2	0	02-답	2,581.70	1-개인	하귀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3	0	02-답	1,316.2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4	0	02-답	3,891.90	1-개인	김범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5	0	02-답	3,925.10	1-개인	유준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6	0	02-답	3,927.40	1-개인	김종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7	0	02-답	1,732.20	1-개인	김종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8	0	02-답	830.2	1-개인	김원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49	0	02-답	1,331.30	1-개인	김원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0	0	02-답	4,002.10	1-개인	김범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1	0	02-답	3,990.90	1-개인	김범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2	0	02-답	3,904.40	1-개인	서창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3	0	02-답	1,632.9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4	0	02-답	3,837.7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5	0	02-답	3,749.80	1-개인	정찬원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6	0	02-답	3,888.90	1-개인	백원석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7	0	02-답	3,946.80	1-개인	백묘순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8	0	02-답	4,081.80	1-개인	이광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59	0	02-답	2,009.70	1-개인	김현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0	0	02-답	1,833.7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1	0	02-답	4,040.00	1-개인	강성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2	0	02-답	2,168.20	1-개인	김환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3	0	02-답	1,483.1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4	0	02-답	3,921.0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5	0	02-답	1,104.50	1-개인	이성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6	0	02-답	553.4	1-개인	이정성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7	0	02-답	2,575.30	1-개인	조희우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8	0	02-답	1,494.50	1-개인	조우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69	0	02-답	1,788.90	1-개인	조우용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0	0	02-답	2,327.60	1-개인	조수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1	0	02-답	4,690.00	1-개인	진복덕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2	0	02-답	4,277.6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3	0	02-답	3,947.9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4	0	02-답	2,881.00	1-개인	이의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5	0	02-답	5,366.30	1-개인	김경순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6	0	02-답	6,175.10	1-개인	김순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7	0	02-답	2,723.30	1-개인	김만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8	0	02-답	2,302.00	1-개인	김만균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79	0	14-도로	1,451.5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0	0	18-구거	182.5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1	0	18-구거	2,156.5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2	0	18-구거	4,210.1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중흥리	1	483	0	14-도로	3,916.00	2-국유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4	0	18-구거	164.5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5	0	18-구거	164.8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6	0	18-구거	323.2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7	0	18-구거	966.9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8	0	14-도로	2,337.7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89	0	18-구거	1,011.9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90	0	18-구거	2,529.4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	491	0	14-도로	260.2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4	0	02-답	1,454.10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5	0	02-답	586.7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6	0	02-답	4,068.60	1-개인	은대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7	0	02-답	1,892.70	1-개인	채규홍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8	0	02-답	2,252.20	1-개인	김범정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49	0	02-답	4,133.60	1-개인	신연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0	0	02-답	3,294.60	1-개인	신연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1	0	02-답	815.9	1-개인	이정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2	0	02-답	2,081.70	1-개인	신희배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3	0	02-답	2,130.6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4	0	02-답	4,239.2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5	0	02-답	2,331.80	1-개인	강성길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6	0	02-답	975.1	1-개인	강병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7	0	02-답	4,107.40	1-개인	유준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8	0	02-답	4,051.20	1-개인	김범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59	0	02-답	4,575.60	1-개인	최영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0	0	02-답	1,409.70	1-개인	최영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1	0	02-답	2,685.40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2	0	02-답	3,259.50	1-개인	김영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3	0	02-답	792.9	1-개인	최동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4	0	02-답	4,086.50	1-개인	최동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5	0	02-답	4,018.60	6-법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6	0	02-답	2,967.10	1-개인	권영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7	0	02-답	1,050.30	1-개인	권영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8	0	02-답	3,778.00	1-개인	강미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69	0	02-답	4,287.10	1-개인	정성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0	0	02-답	3,951.9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1	0	02-답	2,387.00	1-개인	한충교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2	0	02-답	2,154.10	7-종중	신천송씨선양공파광세(찬)문중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3	0	02-답	1,900.8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4	0	02-답	3,960.2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5	0	02-답	1,274.90	1-개인	김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6	0	02-답	2,834.00	1-개인	김기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7	0	02-답	4,012.80	1-개인	최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8	0	02-답	4,063.60	1-개인	진종호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79	0	02-답	2,459.10	1-개인	김재국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0	0	02-답	1,508.00	1-개인	김길홍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1	0	02-답	4,104.20	1-개인	고영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2	0	02-답	4,072.20	1-개인	정만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3	0	02-답	848.1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4	0	02-답	2,118.00	1-개인	최재수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5	0	02-답	2,128.40	1-개인	김정숙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6	0	02-답	1,294.10	1-개인	윤만권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7	0	02-답	2,700.80	1-개인	박애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8	0	02-답	3,552.00	1-개인	이길동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89	0	02-답	2,756.80	1-개인	이기범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0	0	02-답	2,095.00	6-법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1	0	02-답	3,940.00	1-개인	오순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2	0	02-답	3,280.30	1-개인	정만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3	0	02-답	3,698.2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4	0	02-답	3,881.8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5	0	02-답	2,379.4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6	0	02-답	1,943.90	1-개인	장재선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7	0	02-답	2,611.90	1-개인	장정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8	0	02-답	1,883.20	1-개인	장정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399	0	02-답	2,054.40	1-개인	윤덕순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0	0	02-답	3,962.10	1-개인	서규석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1	0	02-답	432.9	1-개인	황동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2	0	02-답	2,428.50	1-개인	박말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3	0	02-답	1,515.40	1-개인	정재금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4	0	02-답	1,027.90	1-개인	이한구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5	0	02-답	3,583.20	1-개인	김국성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6	0	02-답	1,775.10	1-개인	조영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7	0	02-답	1,623.60	6-법인	재단법인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8	0	02-답	850	6-법인	재단법인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09	0	14-도로	1,522.0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0	0	14-도로	8.1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1	0	14-도로	4.4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2	0	18-구거	2,817.8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3	0	14-도로	13.8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4	0	14-도로	1,849.7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5	0	18-구거	1,091.0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6	0	18-구거	2,144.8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7	0	18-구거	59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8	0	18-구거	26.5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19	0	14-도로	1,929.1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0	0	18-구거	90.4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1	0	18-구거	962.6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2	0	18-구거	90.8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3	0	14-도로	716.6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4	0	14-도로	7.9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5	0	18-구거	1,276.4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6	0	14-도로	23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7	0	14-도로	64.5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8	0	18-구거	638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	429	0	14-도로	1,374.70	2-국유 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85	0	02-답	2,230.6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86	0	02-답	2,166.40	1-개인	국영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87	0	02-답	2,396.70	1-개인	김선희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88	0	02-답	3,844.60	1-개인	이춘자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89	0	02-답	4,100.7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0	0	02-답	3,552.2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1	0	02-답	4,001.2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2	0	02-답	2,387.40	1-개인	이대량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3	0	02-답	2,462.90	1-개인	김만순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4	0	02-답	952.7	1-개인	이의동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5	0	02-답	3,490.80	1-개인	이의동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6	0	02-답	2,176.50	1-개인	강성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7	0	02-답	1,549.70	1-개인	강성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8	0	02-답	1,113.7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799	0	02-답	2,194.10	1-개인	김범정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0	0	02-답	1,267.10	1-개인	김강윤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1	0	02-답	3,141.20	1-개인	김금순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2	0	02-답	1,845.6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3	0	02-답	2,257.10	1-개인	김범률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4	0	02-답	4,017.6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5	0	02-답	1,828.5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6	0	02-답	1,253.90	1-개인	김순길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7	0	02-답	4,098.7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1	808	0	02-답	2,792.10	1-개인	박내영
고창군 부안면수남리	1	809	0	02-답	3,171.70	1-개인	김강필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0	0	02-답	3,954.20	1-개인	이창연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1	0	02-답	1,779.90	1-개인	이창연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2	0	02-답	2,219.20	1-개인	김범순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3	0	02-답	4,082.30	1-개인	이춘자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4	0	02-답	3,962.5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5	0	02-답	3,635.00	1-개인	김강희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6	0	02-답	680	1-개인	김낙성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7	0	02-답	1,335.8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8	0	02-답	1,998.4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19	0	02-답	3,988.00	1-개인	김창성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0	0	02-답	784	1-개인	하귀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1	0	02-답	3,974.10	1-개인	김병희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2	0	02-답	4,054.70	1-개인	김범형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3	0	02-답	4,018.80	1-개인	김범영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4	0	02-답	2,029.40	1-개인	김범곤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5	0	02-답	2,160.30	1-개인	강치구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6	0	02-답	3,448.30	1-개인	이동현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7	0	02-답	4,652.50	1-개인	강치구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8	0	02-답	2,031.40	1-개인	이권근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29	0	02-답	3,209.20	1-개인	서기명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0	0	14-도로	1,118.1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1	0	18-구거	1,006.3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2	0	18-구거	1,610.8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3	0	18-구거	2,026.5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4	0	18-구거	1,093.5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5	0	14-도로	239.8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6	0	14-도로	3,044.2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7	0	18-구거	253.2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8	0	14-도로	174.6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39	0	18-구거	134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40	0	18-구거	28.1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41	0	18-구거	11.3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42	0	18-구거	1,048.5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43	0	18-구거	1,473.10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수남리 부안면	1	844	0	18-구거	195.8	2-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공고 제 2019 - 1713호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제17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따라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위탁사무	수탁기관(대표자)	위탁운영기간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정○만)	2020. 1. 1 ~ 2022. 12. 31